「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4635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강정수 의원
찬 성 자 : 설재영, 박용준, 김동성, 김태민, 최미자, 이원배, 박순호, 송용석, 김세원, 신진미, 양유환, 김명현, 함미정, 최혜연, 정홍근, 최병순, 오세길(17인)

1. 주 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을 견제·감시하고 있으나, 조직·예산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3. 수신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대표,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

4. 건의안: 별첨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뜻을 지방정책에 반영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은 있었으나, 조직과 예산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지방의회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아래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 재정적·조직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지방의회법」의 입법 논의가 최근 다시 본격화 되면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율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라.

2026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일동